



유천면 방범용 감시카메라(CCTV)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범죄예방 및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(CCTV)의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.

2016년 01월

유 천 면



1. 행정예고 할 내용 : 『유천면 방범용 감시카메라(CCTV) 설치』

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- 가. 범죄예방 및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설치 예정인 『방범용 감시카메라(CCTV)』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나.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다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지침
라.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 라인
마. 행정절차법 제46조 (행정예고)
바.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(행정예고의 대상)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16년 01월 08일 ~ 2016년 01월 27일까지(20일간)

5. 공고방법 : 예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)

6. CCTV 설치예정 위치

- 가.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390-1번지 일원
나.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239-3번지 일원

7. 의견제출

- 가. 감시카메라(CCTV)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0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천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유천면사무소 총무담당(☎ 054-650-6608, FAX 054-650-6688)

※ 주소 : 경북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-8 (우 36840)